

이천시시세감면조례증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1998. 5.
제출자 : 이천시장

□ 제안이유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에서 수립한 「장애인 복지발전 5개년계획」의 지방세 지원방안 중 자동차세 감면대상 확대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복지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골자

- 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자동차세를 최초로 취득한 1대에 대하여 “배기량 2,000㎠㎠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를 “배기량 2,000㎠㎠이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적재적중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로 감면대상을 확대함(안 제2조).
- 나.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인 장애인에 대한 자동차세를 최초로 취득한 1대에 대하여 “배기량 2,000㎠㎠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를 “배기량 2,000㎠㎠이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이하인 승합자동차, 적재적중 1톤이하인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로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감면대상으로 볼 수 있는 자동차중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를 추가로 신설함(안 제4조).

이천시조례 제 호

이천시시세감면조례증개정조례(안)

이천시시세감면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직계 존·비속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취득한 1대(당해 자동차를 폐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 한다.

1. 배기량 2,000㎤씨 이하인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적재적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등록여부를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매매의 일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다만, 제시한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동차폐차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4.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제4조제1항중 “자동차(배기량 2,000㎤미만 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1대에 한한다)에 대하여”를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취득한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로 하고, 등조동항에 각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배기량 2,000㎤ 이하인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적재적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제4조제2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 4.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부록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제2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 ①(생략)</p> <p>②국가유공자등에 우발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배기량 2,000㎤씩 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1대에 한하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새로운 승용자동차를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에 소유하던 승용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에는 승용자동차 1대를 소유한 것으로 보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p> <p>1.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매매의 일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다만, 제시한 증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폐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자동차</p> <p>3.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동차폐차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p> <p><신설></p>	<p>제2조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 ①(현행과 같음)</p> <p>②국가유공자등에 우발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직계존·비속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취득한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 한다.</p> <p>1. 배기량 2,000㎤씩 이하인 승용자동차</p> <p>2. 승차점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p> <p>3. 직계직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p> <p>4. 이륜자동차</p> <p>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등록여부를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p> <p>1.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매매의 일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다만, 제시한 증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신·구조문 대비표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승용자동차를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에 소유하던 승용자동차를 이전 또는 할소등록하는 경우에는 승용자동차 1대를 소유한 것으로 보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p> <p>1. ~ 3.(생략) <u><신설></u></p>	<p>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p> <p>1. ~ 3.(현행과 같음) <u>4.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u></p>